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1.1조 일반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농업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농업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반덤핑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관세 당국이란 각 당사국의 법에 따라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운영과 집행을 담당하는 당국을 말한다.

가.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연방주민등록세관항만보안청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
그리고

나.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관세청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

관세는 모든 관세 또는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그러한 수입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지칭하나,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가. 1994년도 GATT 제3조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1994년도 GATT 제6조, 반덤핑 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합치되게 적용되는 반덤핑, 상계 또는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

다.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라. 「농업에 관한 협정」 제5조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관세

관세평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일이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2의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를 말한다.

GATS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또는 HS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말하고 그 일반해석규칙, 부의 주, 류의 주, 그리고 소호의 주를 포함한다.

수입허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공동위원회란 이 협정의 제17.1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조치란 법, 규정, 규칙, 절차, 결정, 관행, 행정조치의 형태이거나 그 밖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모든 조치를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다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란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이란 1994년 4월 15일에 마라케쉬에서 채택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말한다.

제1.2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그리고 상품,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시장접근 및 무역 자유화를 증진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강화하며 양 당사국 간의 경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제1.3조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되게 양 당사국 간의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제1.4조 지리적 적용범위

이 협정은 다음에 적용된다.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자국의 법에 정의된 대로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아랍에미리트가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영토, 자국의 자유지역을 포함한 내수, 해저 및 하층 토를 포함한 영해, 그러한 영역과 수역 위의 상공뿐만 아니라 접속수역,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

한국의 경우,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 및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

제1.5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그러한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2. 이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협정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즉시 서로 협의한다.

제1.6조 지역 및 지방 정부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지역 및 지방 정부와 당국에 의한, 그리고 자국의 영역 내에서 중앙, 지역 및 지방 정부나 당국이 위임한 정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2. 이 규정은 1994년도 GATT 제24조제12항 및 1994년도 GATT 제1조제3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된다.

제1.7조

특명성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과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국의 국제 협정을 공표하거나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2. 제1.8조를 저해함이 없이, 각 당사국은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응답하고, 요청에 따라 제1항에 언급된 사안에 대한 정보를 서로 제공한다.

제1.8조

비밀 정보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당사국의 법 집행을 저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거나, 또는 경제 운영자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 정보를 당사국이 공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